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치료 중

# 간병료 및 부대비용 지급 안내

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이
개정(2021.9.24. 공포, 2022.3.25. 시행)되면서
**이제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치료 중**
**간병료 및 부대경비 지급이 가능해졌습니다.**

학교안전공제회

01

# 간병료와 부대경비의 지급대상 및 지급 제외 대상

**간병료**

- 의료기관에 **입원하여 요양 중에 간병**을 받으며, 부상·질병 상태가 **간병이 필요한 정도(간병 필요등급)에 해당**할 경우

**부대경비**

- **간병료 지급대상**에 해당하며 **가족*이 간병을 실시**할 경우
  * 피공제자의 친권자·후견인이나 그 밖에 피공제자를 부양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사람(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8조의2제4항)

**지급제외대상**

- 중환자실, 회복실, 폐쇄병동, 완화의료(호스피스) 서비스,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 기간은 간병기간에서 제외
-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간병료를 보상(배상) 받은 경우 중복 보상 불가
  * 간병료 지급 시, 다른 법령 등에 의한 급여를 뺀 차액분만 지급

학교안전공제회

02

# 지급 금액 및 방법

**간병료**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를 준용

**부대경비** 1일당 2만원 지급

간병료 및 부대경비의 지급은
**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대하여 월 단위로 지급**

03

# 제출서류 및 청구방법

## 제출서류

| 구분 | | 포함사항/서류명 |
|---|---|---|
| 필수서류 | 의료인이 발급한 소견서 | • 진단명, 사고발생일, 입원기간<br>• 간병범위, 간병등급, 간병필요정도 소견, 간병기간<br>• 회복실, 중환자실, 호스피스,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여부<br>※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누리집 자료실의 **소견서 서식 활용을 권장**하나, 의료기관의 협조가 불가한 경우에는 **개별 의료기관 서식 활용 가능** (단 소견서 상 포함 사항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함) |
| | 간병인 정보확인 | • 간병인 신분증 사본 |
| | 전문 간병인 활용 시 | • 전문간병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<br>• 간병료 지급 영수증 |
| | 가족 간병인 활용 시 | • 피공제자와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|
| 선택서류 | 입원 확인서등 의무기록 | • 피공제자의 간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의무기록 |

**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**
(http://www.schoolsafe.or.kr/school/login.do)에서 청구 가능

※ 간병료 및 부대비용 청구 기능은 4월 25일 오픈 예정이며, 자세한 청구 방법은 시스템 매뉴얼 참조

# 안전한 학교생활
# 행복한 학교생활

두터운 학교 안전망
학교안전공제회가 함께합니다!

학교안전공제회